



의안번호	제51호
------	------

**논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제 출 자	논산시장
제출연월일	2022. 4. 13.

# 논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51호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22. 4. 13.  
제 출 자 : 논 산 시 장

## 1. 개정이유(배경·필요성)

상위법령인 「지방세법」 제55조에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담배소비세 조항을 삭제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.

## 2. 주요내용

담배소비세 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조례 위임 규정 미존재(「지방세법」 제55조에 규정) (안 제4조)

개정전	개정후
제4조	삭제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

「지방세법」 제55조 및 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65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기타사항

1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
2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

3) 규제심사 : 규제심사 대상 아님

4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 : 2022. 2. 25. ~ 2022. 3. 16

나) 예고결과 : 의견없음

5) 충청남도 소관실과 : 충청남도 세정과 (041-635-3637)

□ 개정조례안

논산시 조례 제 호

논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논산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장 담배소비세(제4조)를 삭제한다.

제7조 중 “시장”을 “논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소 관 부 서		성 명
입 안 자	세 무 과 장	임 성 영
	지 방 소 득 세 팀 장	김 종 현 (746-5441)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제2장 담배소비세</u></p> <p><u>제4조(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)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논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1.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</u></p> <p><u>2.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</u></p> <p><u>3.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</u></p> <p>제7조(신고의무)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「지방세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84조에 따라 <u>시장</u>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</p>	<p><u>&lt;삭 제&gt;</u></p> <p><u>&lt;삭 제&gt;</u></p> <p>제7조(신고의무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논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</u>----- -----.</p>

**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**

- 해당없음

**2. 비용추계결과****가. 추계의 전제**

- 해당없음

**나. 추계결과**

- 해당없음

**3. 작성자**

세무과장 임성영

## □ 「지방자치법」

**제28조(조례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

## □ 「지방세법」

**제55조(담배의 반출신고)**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(제53조에 따른 미납세 반출 및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위한 반출을 포함한다)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## □ 「지방세법 시행령」

**제65조(담배의 반출신고)** ① 법 제55조에 따른 반출신고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지난 달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 및 군(이하 이 장에서 “시·군”이라 한다)별 판매량을 적은 자료를 첨부하여 제조장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·군수에게 해야 한다. 다만, 제6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수입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지난 달 시·군별 판매량을 적은 자료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는 과세대상 담배와 미납세 반출대상 담배 및 면세대상 담배의 반출이 각각 구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삭제